

의안번호	2209674
의 퇴 인	박균택의원
회 답 일	2025. 4.16.
추 계 번호	25D1953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9억 6,200만원, 2030년 42억 8,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82억 5,000만원(연평균 16억 5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 (지선)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전·지선)	합계	연평균
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(안 제65조제4항)	3,962	-	-	-	4,288	8,250	1,650

주: 1.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(안 제65제4항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에서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수가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(제8회, 2022년)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5조제4항(선거공보)	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후보자의 범위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※현행법은 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선택사항임	의무규정
2	안 제65조제11항(선거공보)	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·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5조제4항 (선거공보)	○	
2	안 제65조제11항 (선거공보)	-	후보자별로 저장매체를 제출 및 발송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취합하여 단일 저장매체 ¹⁾ 에 저장 및 발송하도록 하여 재정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미대상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면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광역의원 후보자 1,543명 중 493명, 기초의원 후보자 4,445명 중 774명이 임의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
 - 개정안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되면, 후보자 수에서 제출자 수를 제외한 수만큼 선거공보 제출이 증가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본 추계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추계하며, 재·보궐선거는 고려하지 않음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⁾

1) 하나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용량이 증가하나 저장용량의 증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보다는 저장매체 수량 감소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	2.0%
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2026년과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점자형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점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해야하는 후보자 수에 평균 작성비용을 곱하여 산출
 - (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는 후보자 수) 전체 후보자 수에서 임의로 점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하는 후보자 수를 제외하여 산출하면 광역의원 1,050명, 기초의원 3,671명
 -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광역의원 후보자 수는 1,543명이고 이 중 임의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후보자 수는 493명이며, 기초의원 후보자 수는 4,445명이고 이 중 임의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후보자 수는 774명으로 가정
 - (평균 작성비용) 광역의원 기준 2026년 717,308원, 2030년 776,437원으로 추정
 -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점자형 선거공보 평균 작성비용은 광역의원 651,172원, 기초의원 793,436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- 추계결과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9억 6,200만원, 2030년 42억 8,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82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6~2030년

구분		2026 (지선)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합계
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는 후보자 수 (a, 명)	광역	1,050	—	—	—	1,050	—
	기초	3,671	—	—	—	3,671	—
평균 작성비용 (b, 원)	광역	717,308	—	—	—	776,437	—
	기초	874,021	—	—	—	946,068	—
추가재정소요 (=a×b, 백만원)	광역	753	—	—	—	815	1,568
	기초	3,209	—	—	—	3,473	6,682
	합계	3,962	—	—	—	4,288	8,2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수가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(제8회, 2022년)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